

# 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기관의장

람

제1642호 2021. 12. 24.(금)

차 례

## 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298호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————— 1

##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
「하천법」 제33조(하천의 점용허가 등) 및 제69조(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)을 위반하여, 행정대집행법 제3조(대집행의 절차) 제1항, 행정절차법 제21조(처분의 사전 통지)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, 점용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(서류의 송달)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1. 12. 24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공 고 명: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: 2021. 12. 24. ~ 2022. 01. 10.(15일 이상)
3. 법적근거: 「하천법」 제69조(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), 행정대집행법 제3조
4. 공고방법: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, 전국 시·군·구 게시판

## 5. 공고대상 및 내역

점유행위자	점유장소	점유물의 종류	비고
미상	연희동 165-37일원 (아시아드사거리) ~ 연희동 428-228 일원 (공촌2교)	컨테이너, 공사자재, 차량 등	공촌천 일대

## 6. 송달내용

가. 위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위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.

7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하천과(☎ 032-560-091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